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2015년 10월 pp.285~320
한국세무학회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임채철* · 홍정화**

<요 약>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00부 중 총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일부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이 결여되어 조사대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274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의 구성 및 변수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및 소벨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법인전환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 제재 요인이 보상 요인보다 더 법인전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납세자 보상은 예상과 달리 법인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납세자 보상책이 아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일부보조금 성격인 것에 불과하고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법인의 경우 당연히 적용되므로 유인책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보상 여부는 소득세부담수준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이 소득세부담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동기가 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확인을 받게 되며, 탈세상황에 직면한 세무대리인은 부실확인으로 인한 징계를 회피하고자 신고소득율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높아진 소득세 부담수준은 결국 조세절감 목적의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보상 여부는 납세협력비용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

*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cclims@naver.com, 주저자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hong@gachon.ac.kr, 교신저자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납세협력비용에 관계없이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납세자의 제재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기장료와 조정료의 인상으로 추가적인 세무대리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성실신고확인제도, 제재와 보상, 법인전환인식

I. 서 론

2011년부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그 성실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표준양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새로운 검증수단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당초 세법개정안 발표시에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로 도입될 예정이었던¹⁾ 이 제도는 그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국회에서 입법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60%(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다.²⁾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과 동시에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확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은 최고 자격정지까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방안은 강화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과 더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 제도시행 첫 해인 2012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폐업사유를 법인전환으로 기재한 사업자가 다른 해에 비해 증가했으며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간의 전체개인사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차지하는

1)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2010년 세법개정안』 2010.8.23)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3) 국세청은 제도시행 초기 상당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며 제도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자 법인전환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예고하기도 했다(조세일보 2013.2.27 참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인전환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하단의 각주 4 참조).

4)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국세통계연보, 2014 참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기업조직형태선택에 있어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

세법은 기업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하고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그리고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각각 적용한다. 그런데 과세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기업주의 급여에 대해서 손비인정을 해주는 등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다.

단순히 세율측면만을 고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소득세가 38%, 법인의 경우가 22%이므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게 되면 합리적 개인사업자는 절세목적으로 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절세목적 이외에도 대외신용도 제고, 자본조달의 용이성, 유한책임, 경영효율성 제고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목적만을 가지고 납세자는 즉각적인 법인전환을 결정하지 않는다. 실무상에서 법인전환은 절차의 복잡함, 법인유지여건의 미비, 상법상의 규제 등 각종 장애요인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이라면 법인전환 동기와 장애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법인전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정화용·한용수, 2005).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조세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이 받지 않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고 제3자의 간섭이 요구되므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개인의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기업이 가능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이점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전환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자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여겨지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행위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오히려 성실신고확인제도정착의 주요한 회피수단으로 인식되며 새로운 검증대상이 된 것이다(임채철, 2015).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후 급증하는 법인전환사례를 통해서 그 연구의 동기를 찾았으며 납세자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구 분	법인전환(A)	법인전환비율(A/B)	전체폐업자(B)
2009년	4,828	0.574%	840,941
2010년	4,721	0.549%	860,335
2011년	5,105	0.569%	897,168
2012년	5,806	0.653%	889,500
2013년	4,932	0.571%	863,195

5)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국세통계연보, 2014 참조).

귀속연도	전체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비 율
2011	3,956,702	69,556	1.76%
2012	3,903,406	65,275	1.67%
2013	4,105,507	67,937	1.65%

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 부담수준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납세협력비용이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배경 및 성실신고확인 절차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세무사 등⁶⁾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책임 있는 세무대리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당초 조세탈루가 많은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했던 세무검증제도가 국회입법과정을 거치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나영 등, 2012).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세 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별 구분은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업종과 일치하나 적용대상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하향 조정되어 적용대상자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표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업 종	2011년-2013년	2014년 이후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억원 이상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5억원 이상	10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	7억 5,000만원 이상	5억원

자료 : 박주영 등(2014)

6)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3항).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⁷⁾

둘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⁸⁾

셋째, 성실신고확인 이행시 혜택과 위반 시 불이익을 보면, 먼저 혜택으로서 ①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⁹⁾,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공제¹⁰⁾ 등을 들 수 있다. 불이익을 들면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¹¹⁾로 부과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가 신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다. 다만, 장부 및 증명서류로는 매출누락을 알 수 없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허위증빙 등을 제시하여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는 허위확인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김진환·서성호, 201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8) 소득세법 제72조의2 2항.

9)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방식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지출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본 제도가 고소득자영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과 동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에서 세액공제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없는 셈이다.

1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1)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

넷째, 사업자가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상을 확인하였다는 세무대리인의 서명과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와 확인 결과에 대한 주요항목 명세서,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으로 구성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가. 선행연구의 요약

김정호(2012)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금전적인 책임(벌금의 부과)과 비금전적인 책임(업무중지 등의 징계)으로 구분하였고 혜택으로 금전적인 혜택(성실신고확인 수수료)과 비금전적인 혜택(충성도 높은 유대관계와 장기간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위험 부담인 책임과 혜택 중 어느 부분이 성실신고의사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의 책임의 중과가 혜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만큼 권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박상균(2012)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성실성추정의 위배와 헌법상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검증주체의 지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으며, 세무사 등 확인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만 공제한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과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성실성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것,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정부부담, 성실신고확인자의 책임한계,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자료청구, 열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진환·서성호(2012)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신고납세제도하의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위헌성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주장을 하였다. 첫째, 헌법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위해 자발적인 검증과 교차검증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발적 사후검증 후 성실성이 입증된다면 세무조사를 면제할 것도 주장하였다. 둘째,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는 점을 지적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가 전부 부담할 것과 및 과세표준양성화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경감제도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책임과 면책기준을 내부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납세자가 제시한 장부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세무조정대상자 선정기준과 같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상기 등(2012)은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성실신고확인에 적지 않은 사회적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가 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조세제도의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부실한 확인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넷째,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다섯째, 납세자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만으로 성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규정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둘째,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성실한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을 억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대한 감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세무대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광운·정규언(2012)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이라는 연구에서 첫째,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할 것 둘째,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을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할 것 셋째,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락(2014)은 영남권 지역의 성실신고 대상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3개 집단군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환경, 당위성, 필요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납세의식을 납세윤리, 공평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납세순응행위는 충성도, 불평행동, 무행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3개 하위요인이 납세의식의 3개 하위요인이 각각 납세순응행위의 3개 하위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납세의식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3개 하위요인 모두 납세의식 3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납세의식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3개 하위요인과 납세의식의 1개 하위요인인 공평성이 납세순응행위의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의 불평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납세의식의 성실납세와 공평성은 납세순응행위의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의 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환경, 당위성,

필요성의 3개 하위요인과 납세의식의 성실납세, 공평성의 2개 하위요인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중석(2014)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세무조사 및 가산세제도, 유인요인의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국세청 인프라 구축에 의한 세원포착요인은 납세순응도에 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시 확인할 항목요인들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의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검토,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사업용 계좌 확인은 납세순응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입금 검토는 납세순응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 범위 확대요인 중 확인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의 지지는 납세순응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일부는 법인전환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제재,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과 제재요인은 모두 납세순응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과 제재요인 중 납세순응도에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사업자와 대리인 모두 제재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 도입 실시 2년이 경과된 제도로 제도개선요인은 납세순응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미(2015)는 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효성 검증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성실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효세율, 소득금액비율 및 신고소득률을 측정치로 하여 시행 전후를 검증한 결과, 유효세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개별사업자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 급여, 차량유지비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이 감소하였다. 이는 성실신고확인항목의 검증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기은·박성욱(2012)에서는 부동산 정책 인식에 따른 납세태도와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납세태도는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정책의 형평성이 납세자의 인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형평성에 근거한 조세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서 납세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납세 준수 태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세 입법적 과정과 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투명화하고 납세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기존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문헌적 고찰을 통해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회피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법인전환 행위만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정 조세정책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라는 납세자의 구체적 의사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방법상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거의 대부분 세무대리인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자로 한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선정하여 단순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체계적인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납세자 제재 및 보상을 독립변수로 하고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협력비용을 매개변수로 하며, 최종적으로 종속변수로 법인전환인식을 설정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협력비용이라는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여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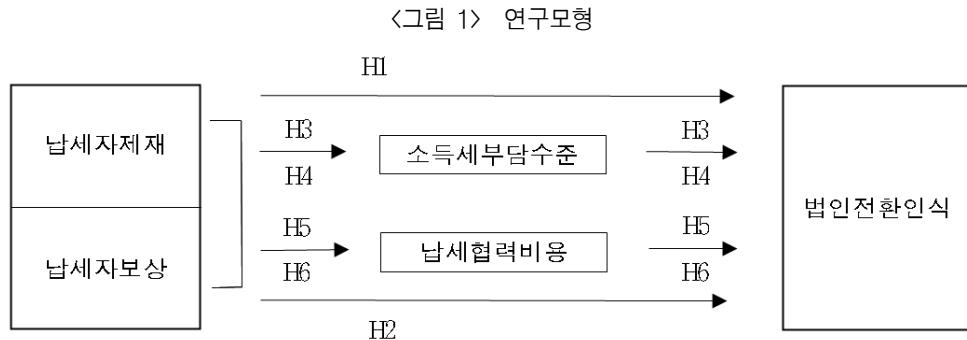
가.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을 독립변수로 각각 설정하고 종속변수로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을 설정하여 독립변수의 직접적 영향 여부를 검증하며, 또한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협력비용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의 간접적 영향력 여부를 검증한다.

김정호(2012)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에서 세무대리인의 책임(금전적, 비금전적)과 세무대리인의 혜택(금전적, 비금전적)을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s)로 하여 종속변수(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통제변수로 세무연령, 세무학력, 세무경력, 업무위험, 법인전환, 고객성향, 윤리의식, 조세투명성을 정의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이철우(2009)는 납세자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납세자의 상황요인 5가지, 납세자의 조세관련 인식요인 5가지, 납세자의 법인전환 장애 인식요인 3가지를 독립변수로 절세목적 개인기업의 법인전

환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나. 연구가설의 설정

(1) 납세자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가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먼저 납세자 제재방안에 대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법인전환을 택함으로써 조세절감과 세무조사확률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방안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재방안 이외에 몇 가지 유인책을 두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줌으로써 보다 여유 있는 신고가 가능하다. 또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지불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60%를 세액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최고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가운데 실제 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인 100만원 이내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부담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모두 환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 이외에도 납세자는 일반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 2>을 설정한다.

<가설 2>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납세자의 제재/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 소득세부담수준의 매개역할 검증을 위한 가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을 이행한 이후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사후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결과로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보수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또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는 가사경비나 증빙불비경비의 부인으로 이어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부담수준을 높일 것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잠재적 벌칙수준이 증가하면 낮은 벌칙수준에 비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세무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이환근, 2001). 결국, 소득세부담수준의 변화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부담수준이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법인전환인식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세액공제, 신고납부기한 연장,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이전부터 정직하게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기업이라면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해 소득세의 부담수준은 오히려 낮아져야 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유인책으로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수준이 낮아진다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할 유인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부담수준이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납세자의 제재/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 납세협력비용의 매개역할 검증을 위한 가설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는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협력비용은 세무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은 세금관련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한 내부비용과 세무대리인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지출하게 되는 외부비용으로 구분된다(홍인수, 2013).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게 되므로 외부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고 성실신고확인준비를 위한 시간과 서류준비 등의 내부비용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세협력비

용이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5>를 설정한다.

<가설 5>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와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오히려 기업의 내부비용을 줄일 것이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확인비용 등 외부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억제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6>을 설정한다.

<가설 6>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다. 김정호(2012)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처리변수로 세무대리인의 책임(금전적, 비금전적)과 세무대리인의 혜택(금전적, 비금전적)을 설정한 바 있고, 배수진(2010)은 제재와 보상이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에서 처리변수인 제재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대상자선정방식의 공개를, 그리고 보상에는 성실납세자혜택을 선정하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보상은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② 의료비 및 교육비의 추가공제, ③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제재는 ① 성실신고 미이행시 수시조사대상 선정, ②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5% 가산세 부과 2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나. 매개변수

위에서 정의된 독립변수들은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의 부담수준과 납세협력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형곤·최강득(2012)에서는 납세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인의 능력 및 활동을 매개변수로 지정하여 납세자의 평가와 상황이 세무대리인의 능력 및 활동으로 인해 성과만족으로의 도달과정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되는 것이 매개변수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협력비용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다.

(1) 소득세 부담수준

박주영 등(2014)은 추가분석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를 통해서 세금부담을 분석한 바 배당비용의 감소에 따라 세금부담의 합계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대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부담을 낮추고자 법인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납세자에 제재와 보상은 각각 소득세부담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독립변수가 됨과 동시에 소득세 부담수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납세협력비용

홍인수(2013)는 납세협력비용을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의 합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비용과 외부전문가 등에게 지불하는 외부비용으로 구분된다. 내부비용은 세금관련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투입되는 비용이다. 반면 외부비용은 성실신고확인비용을 포함한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세무조사제도, 가산세 제도 기타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벌 제도 등은 결과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 또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은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은 납세협력비용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납세협력비용수준의 변화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통제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요인으로 선정된 독립변수들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인 성별, 직업, 경력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분석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한다.

라.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법인전환인식’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긍정도, 전환경향,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유리한 점, 타인에 대한 권유의향, 기업이미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가.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는 서울·경기지역의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고, 독립변수들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도록 설계한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상황요인에 관련한 설문으로, 성별, 직업, 사업경력, 연령, 업종, 매출액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달리 정하여 그 대상자 여부를 구분한다. 조사대상자에게 업종과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질문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와 관련된 제재와 보상에 관한 설문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추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1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수시조사대상선정,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5% 가산세부과, 미이행시의 제재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셋째, 매개변수인 소득세부담수준에 관련한 설문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수시조사대상선정가능성, 성실신고확인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넷째, 매개변수인 납세협력비용에 관련한 설문으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여부, 세무대리비용의 증가여부, 성실신고 미확인가산세로 인한 자료의 준비, 제출등과 관련한 내부비용의 증가여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1개월 연장으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여부, 성실신고확인보수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여부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섯째, 종속변수인 법인전환인식과 관련한 설문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경향이 높아졌는지, 법인전환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권유하겠는지, 법인전환기업의 사회적 인식이 사업에 유리한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나.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연구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지역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설문은 세무대리인 및 지인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00부 중 총 28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71.25%이었다. 이중 일부 간접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이 결여되어 조사대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1부를 제외하였고 274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다.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의 구성 및 변수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검증 및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및 소벨검증을 실시하였다.

라. 검증모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인식(Y)을 종속변수로 하고, 납세자 제재(STN)와 납세자 보상(RWD)를 독립변수로 하며, 성별(SD) · 직업(PD) · 경력(CD)을 통제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다.

$$Y = \alpha + \beta_1 \cdot \text{STN} + \beta_2 \cdot \text{RWD} + \beta_3 \cdot \text{SD} + \beta_4 \cdot \text{PD} + \beta_5 \cdot \text{CD} + \varepsilon$$

Y : 법인전환인식

STN : 납세자 제재

RWD : 납세자 보상

SD : 성별더미(남성=0, 여성=1)

PD : 직업더미(사업자=0, 세무대리인=1)

CD : 경력더미(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2) 소득세부담수준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가설 3>과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세부담수준(TAX) · 법인전환인식(Y)을 종속변수로 하고, 납세자 제재(STN)와 납세자 보상(RWD) 및 소득세부담수준(TAX)을 독립변수로 하며, 성별(SD) · 직업(PD) · 경력(CD)을 통제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다.

① 1단계(독립변수 → 매개변수)

$$TAX = \alpha + \beta_1 \cdot STN + \beta_2 \cdot RWD + \beta_3 \cdot SD + \beta_4 \cdot PD + \beta_5 \cdot CD + \varepsilon$$

TAX : 소득세부담수준

STN : 납세자 제재

RWD : 납세자 보상

SD : 성별더미(남성=0, 여성=1)

PD : 직업더미(사업자=0, 세무대리인=1)

CD : 경력더미(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② 2단계(독립변수 → 종속변수)

$$Y = \alpha + \beta_1 \cdot STN + \beta_2 \cdot RWD + \beta_3 \cdot SD + \beta_4 \cdot PD + \beta_5 \cdot CD + \varepsilon$$

Y : 법인전환인식

STN : 납세자 제재

RWD : 납세자 보상

SD : 성별더미(남성=0, 여성=1)

PD : 직업더미(사업자=0, 세무대리인=1)

CD : 경력더미(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③ 3단계(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Y = \alpha + \beta_1 \cdot STN + \beta_2 \cdot RWD + \beta_3 \cdot TAX + \beta_4 \cdot SD + \beta_5 \cdot PD + \beta_6 \cdot CD + \varepsilon$$

Y : 법인전환인식

STN : 납세자 제재

RWD : 납세자 보상

TAX : 소득세부담수준

SD : 성별더미(남성=0, 여성=1)

PD : 직업더미(사업자=0, 세무대리인=1)

CD : 경력더미(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3) 납세협력비용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가설 5>와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CCT) · 법인전환인식(Y)을 종속변수로 하고, 납세자 제재(STN)와 납세자 보상(RWD) 및 납세협력비용(CCT)을 독립변수로 하며, 성별(SD) · 직업(PD) · 경력(CD)을 통제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다.

① 1단계(독립변수 → 매개변수)

$$CCT = \alpha + \beta_1 \cdot STN + \beta_2 \cdot RWD + \beta_3 \cdot SD + \beta_4 \cdot PD + \beta_5 \cdot CD + \varepsilon$$

CCT : 납세협력비용

STN : 납세자 제재

RWD : 납세자 보상

SD : 성별더미(남성=0, 여성=1)

PD : 직업더미(사업자=0, 세무대리인=1)

CD : 경력더미(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② 2단계(독립변수 → 종속변수)

$$Y = \alpha + \beta_1 \cdot STN + \beta_2 \cdot RWD + \beta_3 \cdot SD + \beta_4 \cdot PD + \beta_5 \cdot CD + \varepsilon$$

Y : 법인전환인식

STN : 납세자 제재

RWD : 납세자 보상

SD : 성별더미(남성=0, 여성=1)

PD : 직업더미(사업자=0, 세무대리인=1)

CD : 경력더미(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③ 3단계(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Y = \alpha + \beta_1 \cdot STN + \beta_2 \cdot RWD + \beta_3 \cdot CCT + \beta_4 \cdot SD + \beta_5 \cdot PD + \beta_6 \cdot CD + \varepsilon$$

Y : 법인전환인식

STN : 납세자 제재

RWD : 납세자 보상

CCT : 납세협력비용

SD : 성별더미(남성=0, 여성=1)

PD : 직업더미(사업자=0, 세무대리인=1)

CD : 경력더미(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IV. 연구결과 분석

1.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량

가.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 총 27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16명(78.8%)이며 여성이 58명(21.2%)이다. 직업별로는 개인사업자가 166명(60.6%)¹²⁾이며 세무대리인이 108명(39.4%)이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71명(25.9%), 5~10년 미만이 94명(34.3%), 10~20년 미만이 92명(33.6%), 그리고 20년 이상이 17명(6.2%)로 각각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을 살펴보면, 166명 중에서 도소매업 등 종사자가 42명(25.3%),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 등 종사자가 63명(37.9%), 그리고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종사자가 61명(36.7%)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5억 미만이 60명(36.1%), 5억~10억 미만이 56명(33.7%), 10억~20억 미만이 24명(14.5%), 그리고 20억 이상이 26명(15.7%)이다. 이 가운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7명(24.4%)이었다.

〈표 2〉 표본의 분포 및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성	216	78.8
	여성	58	21.2
직업별	사업자	166	60.6
	세무대리인	108	39.4
경력별	5년미만	71	25.9
	10년미만	94	34.3
	20년미만	92	33.6
	20년이상	17	6.2
연령별	20~29세	20	7.3
	30~39세	58	21.2
	40~49세	122	44.5
	50~59세	52	19.0
	60세이상	22	8.0
업종별	도소매업	42	25.4
	제조/음식/숙박/건설업	63	37.9
	부동산임대/서비스업	61	36.7
	소 계	166	60.6
매출규모	5억미만	60	36.1
	10억미만	56	33.7
	20억미만	24	14.5
	20억이상	26	15.7
	소 계	166	100.0
합 계		274	100.0

12) 개인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7명(40.4%)이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전체표본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표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 총 274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법인전환인식과 관련된 설문문항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

(단위 : 명, 점)

항 목	설문문항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실신고 확인제도	납세자제재보상_문1	274	1	5	2.48	1.045
	납세자제재보상_문2	274	1	5	2.33	1.050
	납세자제재보상_문3	274	1	5	2.24	1.027
	납세자제재보상_문4	274	1	5	3.63	1.136
	납세자제재보상_문5	274	1	5	3.26	1.127
	납세자제재보상_문6	274	1	5	3.79	1.065
소득세 부담수준	소득세부담수준_문1	274	1	5	2.27	.927
	소득세부담수준_문2	274	1	5	2.25	.900
	소득세부담수준_문3	274	1	4	2.04	.855
	소득세부담수준_문4	274	1	5	2.29	.934
	소득세부담수준_문5	274	1	5	2.17	.942
납세협력 비용	납세협력비용_문1	274	1	5	3.32	1.062
	납세협력비용_문2	274	1	5	3.38	1.035
	납세협력비용_문3	274	1	5	3.42	1.021
	납세협력비용_문4	274	1	5	2.82	1.006
	납세협력비용_문5	274	1	5	3.37	1.038
법인전환 인식	법인전환인식_문1	274	1	5	3.25	1.068
	법인전환인식_문2	274	1	5	3.37	.953
	법인전환인식_문3	274	1	5	3.50	.992
	법인전환인식_문4	274	1	5	3.41	1.038
	법인전환인식_문5	274	1	5	3.01	.983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 및 보상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3.79,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수사조사 대상선정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3.63,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5% 가산세 부과가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3.26으로 나타나 대체로 평균치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평균치는 2.48,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추가공제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2.33,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달간 연장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평균치는 2.24로 설문응답자들이 다소 낮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세부담수준에 대한 설문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성실신고확인 이행시 수시 조사 대상 선정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세부담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29,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때문에 소득세부담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27,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때문에 소득세부담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4로 설문응답자들이 평균이하로 낮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때문에 자료의 준비 및 제출 등과 관련한 내부비용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42로 나타나 납세협력비용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인전환인식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는 대체적으로 3.0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영향으로 법인전환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사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치는 3.01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 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가. 신뢰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납세와 관련된 구성개념을 구조화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연구대상에 대해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분석은 측정변수의 반복가능성 또는 내적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하(cronbach) 알파 계수를 이용해 개별항목과 전체항목간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했다. Van de Ven & Ferry(1997)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의 값이 0.7에서 0.9 사이일 때 설문문항의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Nunnally(1978)은 알파 계수가 0.5에서 0.6이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으며, 0.7이상의 경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 적용한 설문문항 항목들의 신뢰성은 다음 <표 4>와 같이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 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관련된 문항은 3개항,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과 관련된 문항은 3개항, 소득세부담수준은 5개항, 납세협력비용은 5개항, 그리고 법인전환인식은 5개항으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이들 설문 문항 간에 내적 일관성은 높고, 특정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 내적 일관성이 개선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4> 측정 변수의 신뢰성 검증

항 목	설문문항	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성실신고 확인제도	납세자제재보상_문1	.739	.790	.856	3
	납세자제재보상_문2	.757	.772		
	납세자제재보상_문3	.692	.832		
	납세자제재보상_문4	.670	.607	.768	3
	납세자제재보상_문5	.563	.731		
	납세자제재보상_문6	.574	.718		
소득세 부담수준	소득세부담수준_문1	.742	.863	.890	5
	소득세부담수준_문2	.682	.877		
	소득세부담수준_문3	.780	.856		
	소득세부담수준_문4	.734	.865		
	소득세부담수준_문5	.724	.868		
납세협력 비용	납세협력비용_문1	.761	.833	.874	5
	납세협력비용_문2	.787	.826		
	납세협력비용_문3	.639	.862		
	납세협력비용_문4	.549	.862		
	납세협력비용_문5	.781	.828		
법인전환 인식	법인전환인식_문1	.737	.777	.838	5
	법인전환인식_문2	.635	.808		
	법인전환인식_문3	.713	.786		
	법인전환인식_문4	.732	.779		
	법인전환인식_문5	.506	.806		

나.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적용된 요인분석은 개별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음으로써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 타당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측정된 자료가 과연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사실 상태나 개념을 그대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적용하여 요인들 간의 독립적 해석력을 높였다. 또한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1.0 이상의 값을 보이는 요인만을 선택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 등 독립변수와 관련된 설문문항들을 하나로 묶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법인전환인식을 하나로 묶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 요인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KMO(Keiser-Meyer-Olkin)의 측도와 Bartlett의 검정 등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검정은 변수 간의 편상관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case의 수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0.8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artlett 검정은 요인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계수 행렬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이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행렬 인가를 검정하는 것으로 유사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의 성실신고확인제도상 제재와 보상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은 KMO가 0.816로 0.80 이상이고, Bartlett의 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 0.05이하 이므로 변수와 case의 수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며, 결과적으로 요인분석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특히 6개의 설문문항 항목들의 공통성을 의미하는 추출값이 모두 0.3이상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에 모두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이상의 고유값을 보이는 요인의 수가 2개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맥스 회전한 추출된 요인들의 고유값이 최소 2.056으로 나타났다. 또 추출된 요인의 누적 분산 설명력은 74.390%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상 사회과학분야에서 추출된 요인이 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할 경우 요인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과 관련된 총 6개 설문문항은 납세자 제재 요

인과 납세자 보상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설문 1~3문항(고유값 2.407)으로 납세자 보상과 관련된 항목들이며, 요인 2는 4~6문항(고유값 2.056)으로 납세자 제재와 관련된 항목들로 각각 구성되어 제외되는 설문문항은 없었다.

〈표 5〉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설문문항	성분		추출
		1	2	
납세자제재	납세자제재보상_문4	.005	.874	.765
	납세자제재보상_문5	.302	.769	.682
	납세자제재보상_문6	-.100	.825	.690
납세자보상	납세자제재보상_문1	.886	.057	.788
	납세자제재보상_문2	.895	-.041	.802
	납세자제재보상_문3	.849	.124	.736
고유값 합계		2.407	2.056	
% 분산		40.119	34.271	
% 누적		40.119	74.390	

(2)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는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법인전환인식과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들과 관련된 요인들은 KMO가 0.822로 0.80이상이고, Bartlett의 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 0.05이하이므로 변수와 case의 수가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며, 요인분석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 모든 설문항목들의 공통성이 모두 0.3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에 모두 활용하였다.

<표 6>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최종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1이상의 고유값을 보이는 요인의 수가 3개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출된 요인의 누적 분산 설명력은 67.472%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상 사회과학 분야에서 추출된 요인이 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할 경우 요인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총 15개 설문 문항은 소득세부담수준 요인(5개 문항), 납세협력비용 요인(5개 문항), 그리고 법인전환인식 요인(5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된다.

〈표 6〉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설문문항	성분			추출
		1	2	3	
소득세부담수준	소득세부담수준_문1	.836	.037	-.038	.702
	소득세부담수준_문2	.783	-.038	.028	.616
	소득세부담수준_문3	.864	-.064	-.019	.751
	소득세부담수준_문4	.838	.032	.037	.704
	소득세부담수준_문5	.824	-.152	.026	.703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_문1	-.115	.852	.098	.749
	납세협력비용_문2	-.153	.873	.066	.790
	납세협력비용_문3	-.106	.754	.075	.585
	납세협력비용_문4	.193	.685	.146	.528
	납세협력비용_문5	.007	.877	.032	.770
법인전환인식	법인전환인식_문1	.101	.088	.845	.732
	법인전환인식_문2	-.107	.074	.774	.616
	법인전환인식_문3	-.078	.171	.829	.723
	법인전환인식_문4	-.088	.129	.848	.744
	법인전환인식_문5	.302	-.052	.560	.407
고유값 합계		3.651	3.388	3.081	
% 분산		24.340	22.589	20.543	
% 누적		24.340	46.929	67.472	

다.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21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납세자 제재, 납세자 보상,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법인전환인식에서 추출된 총 5개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법인전환인식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납세자 제재는 0.498, 납세자 보상은 0.138, 납세협력비용은 0.206으로 모두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득세부담수준은 0.035로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도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납세자 제재가 강할수록 법인전환인식은 높아지지만, 소득세부담수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세부담수준은 납세자 보상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 제재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납세협력비용과 소득세부담수준 간에는 음(-)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며, 소득세부담수준이 높아지면 납세협력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시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이란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가 높은 상태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분석결과인 회귀계수 값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분산팽창계수(VIF)가 10 이상인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며, VIF가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VIF가 10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확인될 경우, 그 변수를 제외한 후 다시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이 때 역시 VIF를 확인하여 10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4개 독립변수로 구성된 변인들 간의 VIF 값을 측정한 결과, 최소 1.340에서 최대 2.19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납세자 제재	납세자 보상	소득세 부담수준	납세협력 비용	법인전환 인식
납세자제재	1				
납세자보상	.136**	1			
소득세부담수준	-.033	.539***	1		
납세협력비용	.414***	.036	-0.090**	1	
법인전환인식	.498***	.139**	.035	.206***	1

*** : $p < 0.01$, ** : $p < 0.05$, * : $p < 0.10$.

3. 가설검증

가. 납세자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 세무종사자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관련된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독립변수로는 성실신고확인 제도상의 제재와 보상과 관련된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 요인이며, 종속변수로는 법인전환인식을 각각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직업(납세자, 세무대리인), 성별(남성, 여성), 그리고 경력(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에 따른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업, 성별, 경력을 더미변수로 포함시켰다.

〈표 8〉 납세자의 제재/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종속 변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법인전 환인식	(상수)		1.365	.250		5.461	.000	
	독립변수	STN	.408	.046	.477	8.907***	.000	.953
		RWD	.093	.047	.108	1.983**	.048	.916
	통제변수	SD	.110	.103	.058	1.071	.285	.947
		PD	.178	.086	.111	2.067**	.040	.950
		CD1	.229	.185	.128	1.242	.215	.256
		CD2	.129	.180	.078	.716	.475	.230
		CD3	.221	.180	.133	1.230	.220	.233
	비 고		F값	14.277***	유의확률	.000	수정된 R 제곱	.254

*** : $p < 0.01$, ** : $p < 0.05$, * : $p < 0.10$.

주1) STN : 납세자제재, RWD : 납세자보상

주2) PD(직업 더미변수) : 사업자=0, 세무대리인=1 ; SD(성별 더미변수) : 남성=0, 여성=1
CD(경력 더미변수) : 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먼저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 등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수정된 R제곱 값)은 25.4%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모형의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F값은 14.277(유의확률 $p=0.000$)이므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모형이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지표인 분산팽창계수(VIF)가 5.0이하로, 공차는 1.0이하로 각각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를 의미하는 납세자 제재 요인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408($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납세자 보상 요인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093($p < 0.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더미변수인 직업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178($p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성별과 경력 더미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납세자 제재 요인과 납세자 보상 요인 간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납세자 제재가 0.477이며, 납세자 보상이 0.108로 납세자 제재 요인이 보상 요인보다 더 법인전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고,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도 채택되었다.

그런데 납세자 보상은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확인비용에 대한 일부보조금 성격인 것에 불과하고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법인의 경우 당연히 적용되므로 유인책으로서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안정적 정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납세자의 제재/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 소득세부담수준의 매개효과 검증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 여부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수준을 매개로 하여 법인전환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매개회귀분석(mediation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부담수준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법인전환인식 간의 효과에도 적용이 되는지와 관련된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검정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매개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9>에 3단계로 구분되어 나타나 있다.

먼저 모형 1(1단계 회귀분석)은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매개변수인 소득세부담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이며, 모형 2(2단계 회귀분석)은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법인전환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이다. 이어서 최종 단계인 모형 3(3단계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하고 법인전환인식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한 경우다.

소득세부담수준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1에서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각각 유의적으로 나타나며, 모형 2에서도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마지막 모형 3에서는 매개변수(β_3)가 유의적이어야 한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성별변수, 직업변수, 그리고 경력변수를 통제변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소득세부담수준의 매개효과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납세자의 제재/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 소득세부담수준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종속변수	모형 (1단계 : 독립 → 매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소득세 부담 수준	(상수)		1.381	.236		5.862	.000
	독립변수	STN	-.088	.043	-.107	-2.043**	.042
		RWD	.461	.044	.556	10.455***	.000
	통제변수	SD	.149	.097	.080	1.536	.126
		PD	-.021	.081	-.014	-.260	.795
		CD1	.066	.174	.038	.380	.704
		CD2	.034	.170	.021	.199	.842
		CD3	.005	.169	.003	.028	.977
	매개변수	TAX					
비 고			F값	유의확률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17.148***	.000	.293	.311	.000
종속변수	모형 (2단계 : 독립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법인 전환 인식	(상수)		1.365	.250		5.461	.000
	독립변수	STN	.408	.046	.477	8.907***	.000
		RWD	.093	.047	.108	1.983**	.048
	통제변수	SD	.110	.103	.058	1.071	.285
		PD	.178	.086	.111	2.067**	.040
		CD1	.229	.185	.128	1.242	.215
		CD2	.129	.180	.078	.716	.475
		CD3	.221	.180	.133	1.230	.220
	매개변수	TAX					
비 고			F값	유의확률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14.277***	.000	.254	.273	.000
종속변수	모형 (3단계 : 독립, 매개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법인 전환 인식	(상수)		1.349	.266		5.068	.000
	독립변수	STN	.409	.046	.478	8.844***	.000
		RWD	.087	.056	.102	1.969**	.048
	통제변수	SD	.109	.104	.057	1.047	.296
		PD	.178	.086	.111	2.066**	.040
		CD1	.229	.185	.128	1.235	.218
		CD2	.129	.180	.078	.712	.477
		CD3	.221	.180	.133	1.227	.221
	매개변수	TAX	.121	.035	.111	1.981*	.057
비 고			F값	유의확률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12.451***	.000	.251	.273	.000

*** : $p < 0.01$, ** : $p < 0.05$, * : $p < 0.10$.

주1) TAX : 소득세부담수준, STN : 납세자제재, RWD : 납세자보상

주2) PD(직업 더미변수) : 사업자=0, 세무대리인=1 ; SD(성별 더미변수) : 남성=0, 여성=1

CD(경력 더미변수) : 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모형 1(1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납세자 제재 & 납세자 보상)와 매개변수(소득세부담수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납세자 제재(비표준화 계수 = -0.088 , $p < 0.05$)와 납세자 보상(비표준화 계수 = 0.461 , $p < 0.01$)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2(2단계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법인전환인식)에 대한 독립변수(납세자 제재 & 납세자 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납세자 제재(비표준화 계수 = 0.408 , $p < 0.01$)와 납세자 보상(비표준화 계수 = 0.093 , $p < 0.05$)은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 모형 3(3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납세자 제재 & 납세자 보상)와 매개변수(소득세부담수준)에 대해 종속변수(법인전환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매개변수인 소득세부담수준(비표준화 계수 = 0.121 , $p < 0.10$)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납세자 제재에 대한 매개변수(소득세부담수준)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간접효과는 $ab = -0.088 * 0.121 = -0.011$ 로 총효과($c = 0.408$) 보다 작아($ab < c$)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다. 이어서 간접효과(ab)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 즉 간접효과가 존재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정을 하면, a(독립-매개 간 모형 1의 회귀계수)는 -0.088 (SE : 0.043), b(매개-종속 간 모형 3의 회귀계수)는 0.121 (SE : 0.035)일 때 sobel test 통계량은 -1.761 ($p = 0.078$)로 채택되어 부분매개효과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납세자 보상에 대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납세자 보상의 경우 간접효과는 $ab = 0.461 * 0.121 = 0.0557$ 이며, 총효과($c = 0.093$) 보다 작아($ab < c$) 부분매개효과가 있다. 따라서 간접효과(ab)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 즉 간접효과가 존재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정을 하면, a(독립-매개간 모형 1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461 (SE : 0.044), b(매개-종속 간 모형 3의 회귀계수)는 0.121 (SE : 0.065)일 때 sobel test 통계량은 1.833 ($p = 0.067$)로 유의수준 0.10에서 채택되어 부분매개효과인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 여부는 소득세부담수준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부담수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 제재와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소득세부담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으며, ‘납세자 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소득세부담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4>도 채택되었다.

다. 납세자의 제재/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 납세협력비용의 매개효과 검증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 여부가 납세협력비용에 의해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Baron and Kenny(1986)의 검정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먼저 모형 1(1단계 회귀분석)은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매개변수인 납세협력비용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이며, 모형 2(2단계 회귀분석)은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법인전환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이다. 이어서 최종 단계인 모형 3(3단계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하고 법인전환인식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한 경우다.

매개효과 검정에서 납세협력비용 수준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1에서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각각 유의적으로 나타나며, 모형 2에서도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마지막 모형 3에서는 매개변수(β_3)가 유의적이어야 한다. 매개효과분석을 위하여 성별변수, 직업변수, 그리고 경력변수를 통제변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표 10> 납세자의 제재/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 납세협력비용 수준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종속변수	모형 (1단계 : 독립 → 매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납세 협력 비용	(상수)		1.866	.278		6.707	.000
	독립변수	STN	.407	.051	.443	7.974***	.000
		RWD	-.048	.052	-.052	-.914	.362
	통제변수	SD	-.096	.115	-.047	-.841	.401
		PD	-.303	.096	-.176	-3.162***	.002
		CD1	.355	.206	.185	1.729	.085
		CD2	.133	.200	.075	.665	.506
		CD3	.183	.200	.103	.913	.362
	매개변수	CCT					
비고			F값	유의확률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10.531***	.000	.196	.217	.000

〈표 10〉 납세자의 제재/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 납세협력비용 수준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계속)

종속변수	모형 (2단계 : 독립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법인 전환 인식	(상수)		1.365	.250		5.461	.000
	독립변수	STN	.408	.046	.477	8.907***	.000
		RWD	.093	.047	.108	1.983**	.048
	통제변수	SD	.110	.103	.058	1.071	.285
		PD	.178	.086	.111	2.067**	.040
		CD1	.229	.185	.128	1.242	.215
		CD2	.129	.180	.078	.716	.475
		CD3	.221	.180	.133	1.230	.220
	매개변수	CCT					
비 고			F값	유의확률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14.277***	.000	.254	.273	.000
종속변수	모형 (3단계 : 독립, 매개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법인 전환 인식	(상수)		1.336	.271		4.934	.000
	독립변수	STN	.402	.051	.470	7.864***	.000
		RWD	.093	.047	.109	1.992**	.047
	통제변수	SD	.112	.103	.058	1.082	.280
		PD	.182	.088	.114	2.079**	.039
		CD1	.224	.186	.125	1.203	.230
		CD2	.127	.181	.077	.703	.483
		CD3	.218	.180	.131	1.210	.227
	매개변수	CCT	.016	.055	.017	.282	.778
비 고			F값	유의확률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12.459***	.000	.251	.273	.000

*** : $p < 0.01$, ** : $p < 0.05$, * : $p < 0.10$.

주1) STN : 납세자제재, RWD : 납세자보상, CCT : 납세협력비용

주2) PD(직업 더미변수) : 사업자=0, 세무대리인=1 ; SD(성별 더미변수) : 남성=0, 여성=1

CD(경력 더미변수) : 5년 미만=0, 10년 미만=1, 10년 이상=2.

모형 1(1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와 매개변수(납세협력비용)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납세자 제재(비표준화 계수=0.407)는 유의적($p < 0.01$)이며, 납세자 보상(비표준화 계수=-0.048)은 비유의적($p > 0.10$)으로 나타났다.

모형 2(2단계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법인전환인식)에 대한 독립변수(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납세자 제재(비표준화 계수=0.408, $p < 0.01$)는 유의적이며, 납세자 보상(비표준화 계수=0.093, $p < 0.05$) 역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마지막 모형3(3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납세자 제재 & 납세자 보상)와 매개변수(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종속변수(법인전환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납세협력비용(비표준화 계수=0.016, $p > 0.10$)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중에서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은 모두 납세협력비용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납세자 제재와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 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5>와 ‘납세자 보상과 법인전환인식 간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 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6>은 모두 기각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후 급증하는 법인전환사례를 통해서 그 연구의 동기를 찾았으며, 납세자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 부담수준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협력비용이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2015년 2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연구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00부 중 총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일부 간접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이 결여되어 조사대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1부를 제외하였고 274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의 구성 및 변수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검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및 소벨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은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제재 요인이 보상 요인보다 더 법인전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납세자 보상은 예상과 달리 법인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납세자 보상책이 아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일부보조금 성격인 것에 불과하고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법인의 경우 당연히 적용되므로 유인책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 여부는 소득세부담수준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이 소득세부담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동기가 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확인을 받게 되며 탈세상황에서의 세무대리인은 부실확인으로 인한 징계를 회피하고자 신고소득율을 높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높아진 소득세 부담은 결국 조세절감 목적의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은 모두 납세협력비용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납세자의 제재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기장료와 조정료의 인상으로 추가적인 세무대리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자 수가 대폭 확대되긴 했으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성실신고 비대상 사업자를 포함하여 표본을 수집할 수 밖에 없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설문지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설문조사자의 편의(bias)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둘째, 개인기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으나 이미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은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셋째,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와 보상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전환 이전과 이후의 세부담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실제 조세회피의도의 결과로 세부담이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인전환행위에는 납세자 측 요인과 함께 세무대리인 측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 측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 김중석. 2014.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윤·정규언. 2012.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 회계와 감사 연구 제54권 제2호 (통권 제56호) : 505-527.
- 김광윤·심충진·이영환. 2013. “소득과세의 공정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4호 : 41-72.
- 김명종·송민정. 2013. “홈택스 시스템의 품질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6호 : 133-162.
- 김상기·김현동·김태동. 2012. “외부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회계연구 제17권 : 277-303.
- 김영락. 2014.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 93-121.
- 김정호. 2012.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 : 세무대리인의 혜택과 책임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4집 : 87-108.
- 김진환·서성호.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3호 : 285-315.
- 김한미. 2015. 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검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곤·최강득. 2012. “세무대리인의 능력 및 활동과 납세자의 상황요인이 세무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42집 : 53-74.
- 나 영·곽장미·육지훈.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소득신고의 사결정 변화에 관한 연구”, 2012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436-448.
- 박상균. 2012.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김예나·전병욱. 2014.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 : 1-31.
- 배수진. 2010. 과세당국의 제제와 보상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기은·박성욱. 2012. “부동산 정책인식에 따른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연구 -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69-90.
- 유병관·홍정화. 2014. “세율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219-261.
- 이철우. 2009. 납세자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환근. 2001. 벌칙 강화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7호 : 25-54.
- 임주영 · 박기백 · 김우철. 2014. “소득세 감면제도의 재분배 효과 -SCV 지수 활용-”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 207-226.
- 임채철. 2015.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화영 · 한용수. 2005. “법인전환 동기에 관한 실증연구”, 전산회계연구 제3권 제2호 : 91-112.
- 조세일보. 2013. 2. 27.
- 최원석 · 윤석만. 2014.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수확보정책의 타당성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 189-216.
- 홍인수. 2013.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 1173-1182.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 McGraw-Hill.
- Van de Ven A. and D. Ferry. 1979.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John Wiley, New York.

The Effects of Sanction and Reward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on the Recognition of Incorporation

Lim, Che Chul^{*} · Hong, Jung Hwa^{**}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erform researches on if sanctions by the system inflict any effects on a sole-proprietorship's recognition of conversion to a corporation. And to study on whether reward from the system makes any effects on the recognition of conversion to a corporation.

We collected in total of 285 forms out of 400 distributed and 11 of those collected were removed as they were found to be inappropriate as they showed lack of inconsistency thus used in total of 274 forms for this study. For method of analysis, we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composition of samples and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reliability analysis for collected survey forms, Cronbach's alpha verification and factor analysis for validity analysis, and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for hypothesis 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

First, it was indicated that both reward and sanction on taxpayers affect to recognition of conversion to a corporation. However, unlikely to our expectations, reward to taxpayers inflicted positive effects on the recognition.

Second, it was indicated that whether to give reward or to impose sanction to taxpayers was caused by amount of tax paid and it affected to the recognition.

Third, it was indicated that both reward and sanction to taxpayers were caused by cost spent to costs spent on cooperation to taxation resulting no effects to the recogni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both reward and sanction to taxpayers directly affected the recognition.

〈Key words〉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sanction and reward, recognition of incorporation

* Ph.D Student, Gachon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Gach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